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999. 4. 15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 및 회부일자

○ 제안 : 1999년 4월 1일 제출

○ 회부 : 1999년 4월 1일

3. 제안 이유

○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급속히 줄어 2-3개 학년이 한 학급으로 복식수업을 받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

4. 주요골자

○ 분교장 폐지 (2분교장)

명칭	위치	폐지년월일	폐지 사유
생극초등학교 관성분교장	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	99. 5. 1	농촌교육 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
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장	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	99. 5. 1	

5. 검토의견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에 근거하고, 중앙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침에 따라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 등의 요청으로 분교장 2개소를 앞당겨 폐지하는 것으로
- 학생·학부모의 의견, 지역여건등을 충분히 감안되었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